

2005. 4. 29. 10 : 00
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심 사 보 고 서

1.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
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——1
2.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—4

산업건설위원회

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4. 2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4. 25.
- 라. 상정일자 : 2005. 4. 27.
- 마. 의안번호 : 제2005 - 14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「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개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포상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반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, 과태료를 50% 감액부과 받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전액 납부토록 하는 재처분 조항신설 (안 제4조 제4항)
-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토록 함 (안 제6조 제2항)

- 신고포상금 지급을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연 50만 원,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향 조정 (안 제12조 제1항 제1호)
-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하향 조정함 (안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별표1)
-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(안 제12조 제1항 제5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50%이상 경감되고, 소규모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한 것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한도액이 50만 원 이내로 하향 조정되고,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토록 해 직업적인 신고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,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약속하여 과태료의 50%를 감액 부과하였으나 이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검토됨.
-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 요지 : “해당 없음”

7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- 본 조례안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 후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 포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으로,
- 신고 포상금 지급 방법을 현금에서 지역상품권 등 현물 지급도 가능하도록 하고, 신고포상금도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와 월 2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등
- 직업성 고발자(쓰파라치)의 양산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과태로 부과에 대한 저항 경감 등에도 현실성이 있고, 조례의 체제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음.

8. 소수의견 요지 :

-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향 조정 한다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 달성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생략”

[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4. 2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4. 25.
- 라. 상정일자 : 2005. 4. 27
- 마. 의안번호 : 제2005 - 15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변경과, 직업적인 신고꾼들의 집중적인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담배꽂초,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제외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함 (안 제26조의2 제2항)
- 담배꽂초, 휴지 등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(안 제

26조의2 제4항)

○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(안 제24조 별표7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신고포상금을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이 가능토록 하고, 담배꽂초,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직업적인 신고자(쓰파라치)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므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 요지 : “해당 없음”

7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- 직업 신고꾼들의 집중적인 신고대상인 담배꽂초, 휴지 등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,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

외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,

-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,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여, 조례 시행에 현실성이 있고 체제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음.

8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생략